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059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0,827,210원, 지방교육세 2,749,830원, 농어촌특별세 9,166,1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4. [redacted]시 [redacted]구 B 대 94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C 전 10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916,611,000원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1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827,210원, 지방교육세 2,749,830원, 농어촌특별세 9,166,110원 합계 112,743,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1층과 2층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기에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6. 10.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중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합계 80,661,770원(= 취득세 73,328,880원, 농어촌특별세 7,332,89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갑 제2호증)**
> ○ 귀하께서 2015. 5. 14.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부상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730,000,000원) 및 건축물의 면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주택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 또한 고급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1구의 건물"이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부동산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서 **2013. 3. 29. 현지출장시 1층 부분이 건축물 대장상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나 주택부속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해당 부동산의 경매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층 부분을 다용도실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층과 2층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청구세액의 초과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취득세 100,827,210원, 지방교육세 2,749,830원, 농어촌특별세 9,166,110원 합계 112,743,1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세액 중 합계 80,661,770원(= 취득세 73,328,880원, 농어촌특별세 7,332,89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3,328,880원, 농어촌특별세 7,332,890원 합계 80,661,770원의 환급을 거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 및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경정청구세액(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1층과 2층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그 현황이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1층 피로티(piloti)[1] 구조, 2층 주택 171.36㎡]으로, 2011. 10. 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이 171.36㎡에서 342.72㎡로 직권으로 변경되었다가, 위 변경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2. 2.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이 다시 171.36㎡로 직권으로 정정되었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redacted]지방법원 D) 당시의 감정서(기준시점: 2014. 5. 13.)에는 이 사건 주택의 1층이 피로티 벽체를 이용한 다용도실 형태이고, 2층은 단

1) 지면에 닿는 접지층(接地層)에 있어서 기둥·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외에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방한 구조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에 관하여는 관련 도면 및 사진자료와 외관관찰에 근거하여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2013. 3. 28. 및 같은 달 29.자 현지 출장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이 주택부속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7. 15.자 현지 출장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에 모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며, 1층에는 창고 2개와 방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2016. 1. 22.자 현지 출장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세입자 E이, 2층에는 원고가 각각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사건 주택의 2015. 6. 17.자 2015. 7. 15.자 및 2016. 1. 22.자 각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층에 별도의 현관문이 존재하며, 1층과 2층 모두가 거실 1개, 방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외관상 창문은 1층과 2층에 모두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F은 2015. 3. 17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G, H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redacted]지방법원 2015가단13634호)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원고 전부승소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G, H는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매각할 생각으로 2013. 3. 2. F과 리모델링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10. 착공하여 2013. 4. 20. 준공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당시 171.36㎡ 피로티구조로 이를 주택구조로 변경하고 내장공사도 완공하였는데, F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 3. G, H로부터 점유동의서를 받아 I을 이 사건 주택의 1층에 전입시켜 상주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6)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5. 5. 20.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5. 9. 24.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7) 이후 원고는 2015. 10. 6., E은 2015. 10. 12.에 각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16. 7. 14.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위 주택은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5 내지 8,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제4호)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제1호, 제4호 등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그런데 위 시행령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감정서(기준시점: 2014. 5. 13.)에는 이 사건 주택의 1층이 피로티 벽체를 이용한 다용도실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구조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소송의 내용상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매각할 생각으로 2013. 3. 10. 피로티 구조였던 이 사건 주택의 1층 부분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3. 4. 20.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가 2015. 5. 1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1층 부분을 주택으로 현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점유보조자가 2014. 2. 3. 이 사건 주택 1층에 전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후 원고가 인도명령을 통해 인도받기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5. 9. 24.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임대하여 E은 2015. 10. 12.부터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⑤ 피고의 2015. 7. 15.자 현지 출장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방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의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 이 사건 주택의 2015. 6. 17.자 2015. 7. 15.자 및 2016. 1. 22.자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1층과 2층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각 층에 별도의 현관문이 존재하고, 1층과 2층 모두가 거실 1개, 방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관상 창문은 1층과 2층 모두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층과 2층은 한 가구가 각각 주거생활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청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곽태현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별지 1]

신고 및 경정청구 세액 내역

세목	① 신고세액(원)	② 경정청구세액(원)	차액(원)(①-②)
취득세	100,827,210	73,328,880	27,498,330
지방교육세	2,749,830	0	2,749,830
농어촌특별세	9,166,110	7,332,890	1,833,2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text{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text{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times \frac{\text{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text{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7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끝.